사업실명제 운영지침

제정 2015. 12. 30 개정 2018. 08. 22 개정 2021. 06. 28 개정 2022. 08. 12 [기획예산부 042-600-8144]

제1조(목적) 사업실명제 운영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은 사업실명제 운영을 위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사업실명제" 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'공사'라 한다)의 주요 사업의 선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업 담당자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사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총괄부서"란 공사의 직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3. "사업부서"란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대상사업 선정) ①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은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선정한다.
 - 1.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
 - 2.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
 - 3.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
 - 4.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핵심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정관에서 정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며, 제외시에는 [별지 제3호 서식]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소명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최소 15개 사업 이상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제4조(대상사업 공개)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리스트[별지 제1호 서식] 및 사업내역서[별지 제2호 서식]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공개 시기는 매년 1월말까지이며,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수정한다. 단, 해당연도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, 동 사업의 공개는 유지하고 다음연도에 완료된 사업에 해당하는 수만큼 사업실명제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한다.
- 제5조(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)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마련, 사업 선정 등 사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.
- **제6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장은 총괄부서 본부장, 간사는 총괄부서 부장으로 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06.28, 개정 2022.08.12>
 - 1. 내부위원 : 각 분야별 담당 부서장 중 위원장이 선정한 2인

- 2. 외부위원 :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한 3인 (단, 감독기관 공무원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.)
- ② 위원장은 사업실명제 책임관이 되어 사업실명제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8.12>
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했하다.

제7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- 2.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6.28>
-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1.06.28>
- ⑤ 위원은 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, 직무윤리 사전진단서[별지 제4호 서식]와 직무윤리 서약서 [별지 제5호 서식]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한다. <신설 2021.06.28>
-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<신설 2021.06.28>
-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- **제9조(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 결에서 제척된다. <신설 2021.06.28>
 - 1. 심의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 - 2. 심의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경우
 - 3.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 -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. <신설 2021.06.28>
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06.28>
 - ④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<신설 2022.08.12>
- 제9조2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8.12>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4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0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심의의 경우 심의결과의 통보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6.28>

- 1. 회의일시 및 장소
- 2. 참석위원 성명 및 확인서명
- 3. 회의내용
-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의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21.06.28>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기타)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리스트

1. 선정기준

2. '00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

일련 번호	사업명	선정 기준	사업 완료 또는 진행	사 업 내 역 서 등록여부(○,×)

실명제 사업내역서

사업실명제 등록번호	_		담당부서 작성자		(본부 / 부서명) (이름/연락처/이메일)	
사 업 명						
	○ 추진배경 :	:				
사업개요	○ 추진기간 :	:				
사업개요 및 추진경과	○ 총사업비 :	:				
구신경화	○ 주요내용 :	:				
	○ 추진경과 :					
사업수행자 (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)	○ 최초 입안 - 최초 입안 - 최종 결재 ○ 사업 관련 구분	자 : 자 :	종 결재자	수행기	(간	담당업무 (업무분담 내용)
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						
추진실적						

주요사업 대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

구분	주요사업 리스트 ¹⁾	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리스트	선정기준 또는 비선정기준 ²⁾
1			
2			
3			
4			

- 1) 근거법, 기관 정관 등에서 정한 기관 고유의 사업
- 2) 비선정기준의 경우, 기관 고유의 사업임에도 실명제 대상사업에 빠진 경우, 그 사유를 자세히 기술

직무윤리 사전진단서

위 원 명 : (인)

연번	진 단 내 용		체크사항	
1	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	
2	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	
3	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 등 의 당사자이다.	예 ()	아니오	
4	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()	아니오	
5	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·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()	아니오	
6	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, 단체,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()	아니오	
7	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()	아니오	

^{** &#}x27;예'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직무윤리 서약서

위 원 명 : (인)

상기 본인은 ○○○위원회 위원(장)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(장)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
- 2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3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· 공사 ·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·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5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6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7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8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 · 향응 ·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· 알선행위 금지
- 9.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○ ○ ○ (서명)